

특집1 _ 인권으로 행복한 충남

충남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와 과제

고승희 | 충남발전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

아동청소년들은 부모 및 양육자의 도움을 받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고 균형잡힌 발달을 하며 성인이 되어 사회와 공동체 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주요한 존재로써 인식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들이 지녀야 할 권리와 보호받아야 할 의무를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충남의 아동청소년인권의 실태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동청소년인권 정책

아동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들은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아동청소년의 장애 및 보건복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여가문화와 특별보호조치로 나눌 수 있다.

1)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및시행령'이 만들어져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설치, 단위학교의 자치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두어 학교폭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 기구로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2)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요보호아동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의 제3조와 제10조에 요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개념 및 조치사항

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요보호아동의 보호 정책을 관掌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 아동청소년의 장애 및 보건복지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이들이 교육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서비스로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암환자치료비지원사업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표준형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약물남용방지 대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주관 사업과 대한보건협의회 금연운동협의회로 대표되는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관, 그리고 청소년 단체나 시설 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다.

4)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여가문화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대안학교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대안학교 이외 미인가 대안학교도 존재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안학교 법적 근거를 설립한 것과 더불어 각 부처별로 대안교육 및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5) 특별보호조치

근로청소년의 특별보호와 관련되어 근로기준법의 5장에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62조에 근로청소년의 최저연령과 취직인허가증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착취 및 학대와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의 실태

1)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실태

대부분 학교의 규율과 규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생활 비밀 및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쟁점과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유해매체물과 관련된 법률 등에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보호 연령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참여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참여율이 저

● 특집1 _ 인권으로 행복한 충남

조한 실정이다. 아동·청소년의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유엔아동 권리협약 제15조와 헌법 제21조,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에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여 여전히 학교 내에서의 교사에 의한 체벌과 학교 폭력의 존재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실태

정책을 통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 시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적어 가정위탁, 입양 가정 등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주양육자인 부모에 의한 학대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활용받을 수 있으나, 현재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제공해 줄 뿐, 평가인증 사실이 보육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현실이다.

3) 아동청소년의 장애 및 보건복지 실태

장애 아동·청소년들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아 장애아 통합교육의 비율이 높지 않으며 건강 및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인 종류와 지원 대상이 매우 협소하여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홀로 보내는 아동·청소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보호자 부재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의 원인은 학교 성적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여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

성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생물학 강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성에 대해 배운다는 명목으로 성인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관념들을 갖게 되고 청소년 임신 문제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약물예방교육은 해악에 관한 지식이나 부정적 태도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생활기술이나 보호요인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은 미약하여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며 빈곤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의 해소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4)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여가문화 실태

아동·청소년들이 친화적 인권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며 과거 아동·청소년들이 가정경제의 빈곤과 일탈행동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 자발적 중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탈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적 활동은 학업과 연계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어 자발적 문화활동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특별보호조치 실태

연소자 근로조건의 법위반 사례의 증가는 관리감독의 소홀과 법에 대한 미흡한 홍보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성적 착취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약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

충남의 아동청소년인권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충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아동청소년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며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인권보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인권보장시스템도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문화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활성화 시키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 요보호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가출 등 가정에서 이탈된 위기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며 대안양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보장 및 모든 아동의 기초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의 생존과 발달권을 보장하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지원방안을 강구하며 통합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또한 성교육을 포함하여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초보건 서비스도 확대되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적 활동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업중단 및 이탈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진로직업관련 교육기반을 구축하며 청소년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청소년 노동권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환경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